

가계대출상품설명서 (적격대출용)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돋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특히 취약한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그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 강화된 설명의무 이행을 위하여 고객님이 취약한 금융소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항목 중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 65세 이상 은퇴자 주부 해당사항 없음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

-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유의사항
- 중도상환해약금
- 연체이자율 및 부과사유
- 연체정보 등

※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에는 본 상품설명서의 내용 중 2. 대출이자율, 3. 수수료 등 비용, 6. 연체이자율,

7. 유의사항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및 「연체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1. 상품 개요 및 상품의 특성

• 상품명 :	• 금리적용방식 : <input type="checkbox"/> 고정금리 <input type="checkbox"/> 혼합금리		
• 대출신청금액 :	원	• 대출기간 : 취급 후	개월
• 적용예정금리 :	%	• 예상 실질유효금리 :	%

2. 대출이자율

- 고정금리 : 여신실행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다만, 여신 실행일 현재 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금리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혼합금리 : 최초 약정시 고정금리 약정기간 동안에는 변동없이 금리를 계속 적용
하며 고정금리 약정기간 경과후 대출 잔여기간 동안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 변동금리 예시

u-보금자리론 연동금리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고시하는 매 금리변동 주기가 도래하는 달의 u-보금자리론 기본형 10년 만기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5년마다 변경됩니다.

■ 대출금리 결정(변동) 요인

☞ 대출금리는 원가요소와 마진을 반영하여 결정 됩니다.

원가요소는 ①은행의 자금조달비용 ②고객 신용도에 따른 신용원가 ③제 비용인 업무원가 ④출연료, 교육세 등 법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결정하며, 결정된 대출금리는 개별약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항목(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등)이외에는 대출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은행의 자금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고객예금에 대한 지급이자, 은행이 직접 시장에서 조달하는 경우의 이자비용 및 관련 제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 신용원가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과거 경험과 현재의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손실과 향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을 고려한 비용을 말합니다.
* 고객의 신용도가 연체 발생 또는 대출금 증가 등으로 악화되는 경우 예상손실 증가에 따른 신용원가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업무원가

인건비, 물건비, 제세공과금 등 업무수행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운영비용을 말합니다.

■ 법적비용

업무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법적 비용에 대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반영하고 있는 원가요소로 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금, 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 기한연장, 채무자변경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당시의 원가요소와 마진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수수료 등 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 (%)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대출의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최초대출일로부터 ()년까지 적용합니다.

(예시) 3년 만기 부동산담보대출 1억원을 만기 1년 전에 상환할 경우,

$$1억원 \times 1.2\% \times [365(\text{윤년은 } 366)] \div 1,095(\text{윤년은 } 1,096) =$$

400,000원(윤년은 400,729원)

■ 기타수수료 : 항목(_____) 금액(_____) %, 원

■ 근저당권설정비용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설정금액의 10/1,000을 고객이 부담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은행 부담

- 감액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고객 부담

•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_____ 원

☞ 고객과 은행이 균분하여 부담합니다.

■ 인지세 : (_____) 원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인지세액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기타비용 : 항목(_____) 금액(_____) %, 원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은행이 부담한 근저당권설정 비용과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보증료 또는 보험료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반환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부담한 한도약정수수료, 약정한 도미사용수수료 등은 은행이 반환합니다.

4. 실질유효금리

■ 대출이자와 대출취급시 은행이 고객에게 받는 수수료 등 비용을 합산하여 대출금리(연율)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수수료 등 비용 중 법령에 의거하여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인지세, 국민주택채권매입비), 중도상환해약금, 기타 실비성격의 일부 수수료는 실질유효이자를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상 실질유효금리 계산에 합산된 내역

• 적용예정금리 : (_____) %

• 기타수수료 : 항목(_____) 연(_____) %

5. 이자납입방법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이자를 납입

■ 기타 이자납입방법은 대출거래약정서 참조

6.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율)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연체기간별 연체 가산이자율]로 적용합니다.



